|  |  |  |
| --- | --- | --- |
|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방법>발표에 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한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방법>>을 하달하는 바, 현지의 실제 정황과 연계하여 관철실행 하기 바란다.  첨부: 모니터링 업무 관련 문서서식 참고양식  2012년 8월 21일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방법>**  **제1조** 유통분야 상품품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법률법규와 국무원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3정(三定, 역주: 기구, 구조, 직능을 정함)”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유통분야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의 품질에 대해 샘플테스트를 진행하고 검사결과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는 상품품질 감독검사 활동을 뜻한다.  식품, 보건품, 약품, 의료기계, 농산품 및 기타 법률법규와 규장이 품질 감독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상품은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해당 관할구역 내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업무의 조직실시 및 지도에 책임을 진다.  **제4조** 모니터링하는 검사업무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상품품질 검사에 적합한 법정자질을 구비한 검험기구(이하 “검험단위”)에게 위탁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5조** 검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현지 재정이 해결하고 재정심의 규정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제6조** 모니터링 업무는 국가 법률법규 및 강제성 국가표준, 강제성 업종표준, 강제성 지방표준과 국가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상품품질 판정을 진행해야 한다.  상품포장에 차용한 기업표준 또는 품질승낙을 명시한 경우, 상품포장에 명시한 차용 기업표준 또는 품질승낙에 따라 상품품질 판정을 진행한다. 상품포장에 명시한 차용 기업표준 또는 품질승낙이 강제성 국가표준, 강제성 업종표준, 강제성 지방표준과 국가 유관규정보다 낮을 경우, 강제성 국가표준, 강제성 업종표준, 강제성 지방표준과 국가 유관규정을 상품품질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유통분야 상품품질 상황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중점사항을 확정하고 모니터링 업무 계획을 제정한다. 모니터링 업무 계획은 모니터링 업무 안배, 모니터링 상품 종류, 상품샘플 지역, 검험기구 명칭, 모니터링 정보분석 및 시간안배, 경비예산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모니터링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업무를 조직실시하고 업무필요에 따라 하급 공상행정관리국에 구체적인 모니터링 업무 실시를 위탁할 수도 있다.  **제9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모니터링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샘플 검사 실시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샘플검사 실시방안은 상품품종, 샘플 추출 장소, 샘플수량, 샘플 검사 절차, 검사표준, 검사항목, 판정원칙, 검사결과통지, 재검사 안배, 비용예산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모니터링 대상상품과 관련된 구매장부, 공급원, 수량, 보관장소, 보관량, 판매량 등을 검사해야 하며, 유관 정보기록에 대해 판매자가 서명하여 확인한다.  **제11조**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샘플은 검험단위 인원, 공상행정관리국 법규집행 인원이 유관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추출한다.  추출한 검사용 샘플과 여분샘플은 현장에서 밀봉하고 검험단위 인원, 공상행정관리 법규집행 인원, 판매자 3인이 서명하여 확인한다.  여분샘플은 검험단위 인원, 공상행정관리 법규집행 인원, 판매자 3인의 인가를 거친 후 밀봉하여 보관한다. 판매자는 대신 보관하는 여분샘플을 독자적으로 개봉, 교환, 훼손할 수 없다.  **제12조**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검사용 샘플은 판매자의 입하가격에 따라 구매한다.  검사가 파손 가능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샘플 품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조성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의 동의를 거쳐 검사샘플을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모니터링에 필요한 여분샘플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샘플이 검사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반환한다.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한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지방성 법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샘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검험단위에 국가감독 샘플검사 절차, 검사업무 규범과 샘플 검사 실시방안에 엄격히 따라 검사업무를 전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독단적으로 검사항목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없고, 독단적으로 판정원칙을 수정할 수 없다. 검험단위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검사업무를 하청을 주거나 타인에게 외주를 줄 수 없다.  검험단위는 적시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검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서면으로 샘플규격 생산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그 송달확인 진행을 요구해야 한다.  검험단위가 발급한 검사보고서는 격식과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내용이 완전하고 결론이 명확해야 하며, 그 발급한 검사보고서의 진실성, 정확성,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검험단위는 모니터링 업무 관련 비밀유지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제14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업무일 내에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불합격한 상품은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판매자 또는 샘플규격 생산자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문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서면으로 재심사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서면으로 재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를 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매자가 여분샘플을 사적으로 개봉, 교환, 훼손한 경우, 재심사하지 않는다.  **제16조** 모니터링 업무를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판매자 또는 샘플규격 생산자와 협상하여 재심사 기구를 확정해야 하며, 업무 필요에 근거하여 재심사 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재심사기구의 확정 후, 공상행정관리부문은 5일 업무일 내에 재심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재심사는 원 샘플 또는 여분 샘플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험긱는 적시에 재심사 결과를 모니터링 실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재심사 결론은 최종결론이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재심사 결론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업무일 내에 재심사 결론을 재심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심사 결론이 샘플 합격으로 나온 경우, 재심사 비용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부담한다. 재심사 결론이 샘플 불합격으로 나온 경우, 재심사 비용은 재심사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8조** 법규에 의거, 모니터링을 거쳐 불합격으로 확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도록 감독한다.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교환해 주도록 감독한다.  **제19조** 모니터링 업무를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규에 의거, 모니터링을 거쳐 불합격으로 확정된 상품의 위법 경영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생산자가 불합격 상품을 생산하는 위법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유관 법 집행 부문에 통보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발견한 상품품질 문제의 대해 초점을맞추어 상품품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유관부문과 업종협회가 협력하여 원천(源头)처리와 업종규범을 촉진한다.  **제21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해당 관할 구역에 유통분야 상품품질 검사결과 및 그 정보관리에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여 건전한 심사비준, 분석보고, 긴급처리 업무제도를 제정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독단적으로 대외에 모니터링 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검사결과 및 유관 데이터를 상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 모니터링 업무를 실시하는 공상행정 관리부문은 적시에 모니터링 분석 정황을 종합해야 하며,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에 따라 소비안내를 전개해야 한다.  **제23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적시에 현지 정부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모니터링 업무 분석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모니터링과 관련된 검측결과, 송달증빙 등 문건자료를 적절히 보존해야 한다. 문건자료의 보존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 검험단위가 허위 또는 착오가 있는 검사데이터와 검사결론을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정보를 누설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유관 부문에 통보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검험단위는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26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현재 유통분야 상품품질 모니터링 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해야 하다.  첨부: 모니터링 업무 관련 문서서식 참고양식 |  | **关于印发《流通领域商品质量**  **监测办法》的通知**  各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  现将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制订的《流通领域商品质量监测办法》印发给你们，请结合本地实际情况，认真贯彻执行。  附件：监测工作相关文书表格参考式样  二〇一二年八月二十一日  **流通领域商品质量监测办法**  **第一条** 为加强流通领域商品质量监督管理，保护消费者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等法律法规和国务院关于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三定”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流通领域商品质量监测（以下简称监测），是指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对流通领域销售者销售的商品质量进行抽样检验，并依据检验结果依法进行处置的商品质量监督检查活动。  食品、保健品、药品、医疗器械、农产品以及其他法律法规和规章对质量监管另有规定的商品，从其规定。  **第三条**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指导流通领域商品质量监测工作。  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负责组织实施和指导本辖区范围内的流通领域商品质量监测工作。  **第四条** 监测的检验工作应当委托依法设立、具备与检验商品质量相适应的法定资质的检验机构（以下简称承检单位）进行。  **第五条** 监测工作所需经费按照国家有关规定由当地财政解决，并按照财审规定列支。  **第六条** 监测工作应当依据国家法律法规以及强制性国家标准、强制性行业标准、强制性地方标准和国家有关规定进行商品质量判定。  商品包装明示采用企业标准或者做出质量承诺的，可以依据商品包装明示采用的企业标准或者质量承诺进行商品质量判定。商品包装明示采用的企业标准或者做出的质量承诺低于强制性国家标准、强制性行业标准、强制性地方标准或者国家有关规定时，以强制性国家标准、强制性行业标准、强制性地方标准或者国家有关规定作为商品质量判定依据。  **第七条** 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根据流通领域商品质量状况，确定监测重点，制订监测工作计划。监测工作计划应当包括监测的工作安排、监测的商品种类、商品抽样的地区、检验机构名称、监测信息分析以及时间安排、经费预算等内容。  **第八条** 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根据监测工作计划组织实施监测工作，也可以根据工作需要委托下级工商行政管理局具体实施监测工作。  **第九条** 实施监测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根据监测工作计划制订抽样检验实施方案。抽样检验实施方案应当包括商品品种、抽样地点、样品数量、抽样检验程序、检验标准、检验项目、判定原则、检验结果通知、复检安排、费用预算等内容。  **第十条** 实施监测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检查与被监测商品相关的票证账簿、货源、数量、存货地点、存货量、销售量等，并对相关信息记录在案，由销售者签字确认。  **第十一条** 监测工作所需样品由承检单位人员、工商行政管理执法人员按照有关规定现场抽取。  抽取的检验用样品和备份样品应当场封样，并由承检单位人员、工商行政管理执法人员、销售者三方签字确认。  备份样品经承检单位人员、工商行政管理执法人员和销售者三方认可后封存。销售者不得私自拆封、调换、毁损代为保管的备份样品。  **第十二条** 监测工作所需检验用样品，按销售者进货价格购买。  检验不进行破坏性测试且对样品质量不造成实质影响的，经销售者同意，检验用样品可以由销售者无偿提供。  监测所需备份样品由销售者无偿提供。  无偿提供的样品，检验符合要求的，退还销售者；检验不合格的，由实施监测的工商行政管理部门按照有关规定处理。  地方性法规以及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对样品抽取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十三条** 实施监测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要求承检单位严格按照国家监督抽样检验程序、检验工作规范和抽样检验实施方案开展检验工作，不得擅自增加或者减少检验项目，不得擅自修改判定原则。未经实施监测的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承检单位不得将检验工作转包或者分包他人。  承检单位应当及时将检验结果报送实施监测的工商行政管理部门；检验不合格的，应当同时书面通知样品标称的生产者，并要求其进行送达确认。  承检单位出具的检验报告应当格式规范、内容齐全、结论明确，并对其出具的检验报告的真实性、准确性、合法性负责。承检单位应当严格遵守监测工作相关保密规定。  **第十四条** 实施监测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自收到检验结果后５个工作日内通知销售者，并对不合格商品依法采取相应措施。  **第十五条** 销售者或者样品标称生产者对检验结果有异议的，应当自收到检验结果文书之日起15日内，向实施监测的工商行政管理部门提出书面复检申请。  逾期未提出书面复检申请的，视为认可检验结果。  销售者私自拆封、调换或者毁损备份样品的，不予复检。  **第十六条** 实施监测工作的工商行政管理部门收到复检申请后，应当与销售者或者样品标称的生产者协商确定复检机构，也可以根据工作需要指定复检机构。复检机构确定后，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于5个工作日内通知复检申请人。  **第十七条** 复检应当对原样品或者备份样品进行检验。承担复检工作的检验机构应当及时将复检结果报送实施监测的工商行政管理部门。复检结论为最终结论。  实施监测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自收到复检结论后5个工作日内将复检结论通知复检申请人。  复检结论表明样品合格的，复检费用由工商行政管理部门承担。复检结论表明样品不合格的，复检费用由复检申请人承担。  **第十八条** 对经依法监测确定为不合格的商品，应当督促销售者立即停止销售。消费者要求退货的，应当督促销售者为消费者退换商品。  **第十九条** 实施监测工作的工商行政管理部门对经依法监测确定为销售不合格商品的违法经营行为，应当依法查处；对涉及生产者生产不合格商品的违法经营行为，应当及时通报有关执法部门处理。  **第二十条** 实施监测工作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对发现的商品质量问题，有针对性地加强商品质量监管，配合有关部门和行业协会促进源头治理和行业规范。  **第二十一条** 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负责本辖区流通领域商品质量检验结果及其信息的管理，并制定具体办法，建立健全审核批准、分析报告、应急处置的工作制度。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对外公布或者泄露监测信息。  任何单位和个人不得将检验结果及有关数据用作商业用途。  **第二十二条** 实施监测工作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及时汇总分析监测情况，根据相关规定，按程序开展消费提示。  **第二十三条** 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及时向当地政府和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报送监测工作分析报告。  **第二十四条** 实施监测工作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妥善保存监测相关的检测结果、送达凭证等文书档案资料。文书档案资料保存期限不得少于两年。  **第二十五条** 承检单位出具虚假、错误检验数据和结论及泄露检验结果信息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通报相关部门依法处理。承检单位依法承担相应的责任。  **第二十六条** 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根据本办法，制定本地区流通领域商品质量监测工作具体办法。  附件：监测工作相关文书表格参考式样（略） |